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. 5. 8 선고 2017가단310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9. 4. 10

판 결선고 2019. 5. 8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

- 1) 경주시 C 대 21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지상 컨테이너 건물 18㎡(이하 '이 사건 컨테이너'라 한다)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- 2) 2015. 7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,607원의 비율에 의한 돈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, 피고가 2015. 6.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하면서 2015. 6. 말경 이를 철거하겠다고 약정하였다.

그런데 피고는 약정 철거일 다음날인 2017. 7. 1.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고 있고,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,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·사용함으로써 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,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위 2015. 7. 1.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료 상당액인 월 34,607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1내지 16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또한 피고가 2015. 6.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2015. 6. 말경까지 철거하겠다고 약정하였다거나,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.

2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정순열